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9. 15 선고 2022가단501388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 신용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

담당변호사 유병일

피고 1. A

2. B

3. C

4. D

변론 종결 2022. 8. 25.

판결 선고 2022. 9. 15.

주 문

1. 피고 A은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34,764,849원 및 그 중 134,764,755원에 대하여 2021. 12. 21.부터 2022. 6. 10.까지는 연 8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
 - 가. 1) 망 E과 피고 B 사이에 2021. 9. 14.,
 - 2) 망 E과 피고 C 사이에 2021. 9. 16.,
 - 3) 망 E과 피고 D 사이에 2021. 10. 6.,각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.
- 나. 피고 A에게,

- 1) 피고 B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. 10. 7. 접수 제42557호로 마친,
 - 2) 피고 C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. 10. 7. 접수 제42558호로 마친,
 - 3) 피고 D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. 10. 7. 접수 제42559호로 마친,
-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피고 F, G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).

2. 적용법조

가. 피고 A, B, D에 대한 청구 :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나. 피고 C에 대한 청구 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박지원

별지